

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

-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 요인 조기 발견으로 적정 치료·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도모
 -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형평성 제고
- [건강검진기본법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,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(건강검진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의료급여법 제14조(건강검진)]

I.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로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 치료 및 건강형평성 제고
- 만 66세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과 뇌졸중·심근경색 등 치명률이 높은 질환이 증가하는 연령
- 낙상, 인지기능장애 등 노인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저하되는 시기

II. 사업대상

구 분	대 상
일반건강검진	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19세~만64세 세대주 만40세~만64세 세대원
생애전환기건강검진	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

III.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

- 1) 사업기간 : 2020. 1월~12월
- 2) 검진대상 :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19세~64세 세대주, 만 40세~64세 세대원
 - ☞ 검진주기 : 출생년도에 따라 짝·홀수년도를 구분 실시(2020년→짝수년도 출생자)

< 대상자 선정·관리 >

- 당해연도 대상자는 전년도 11월말 기준으로 대상자를 우선 선정, 이후 12월중 변동사항을 최종 반영
- 사업기간 중 자격변동(건강보험→의료급여) 발생 시 검진대상자로 선정될 당시의 자격으로 검진 실시
- 개인종합검진, 입원, 치료 등으로 대상자 본인이 검진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대상 제외
- 탈북자 또는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당해연도 대상자 추가등록

- 3) 시행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수행
- 4) 검진항목 : 신체계측, 흉부방사선 촬영, 요검사, 혈액검사 등
- 5) 검진기관 :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

IV.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

- 1) 사업기간 : 2020. 1월~12월
- 2) 검진대상 :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
 - ☞ 검진주기 : 출생년도에 따라 짝·홀수년도를 구분 실시(2020년→짝수년도 출생자)

< 대상자 선정·관리 >

- 당해연도 대상자는 전년도 11월말 기준으로 대상자를 우선 선정, 이후 12월중 변동사항을 최종 반영
- 사업기간 중 자격변동(건강보험→의료급여) 발생 시 검진대상자로 선정될 당시의 자격으로 검진 실시
- 개인종합검진, 입원, 치료 등으로 대상자 본인이 검진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대상 제외
- 탈북자 또는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당해연도 대상자 추가등록

- 4) 시행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수행
- 6) 검진항목 : 신체계측, 골밀도 검사(만 66세 여성), 정신건강검사(만 70세) 등
- 7) 검진기관 :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
- 8)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주요 내용

☞ 성별,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, 연령별 예방효과가 탁월한 검진항목 제공

- 노인신체기능(근력, 평형성), 생활습관평가, 인지기능장애(치매), 골밀도검사(골다공증) 포함

※ 검진항목별 대상 연령 및 성별은 상이함